

2017-04 책임연구보고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유지웅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7 |
| 제1절 문제의식 | 7 |
|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8 |
| 제2장 가정폭력의 개념과 긴급임시조치의 성격 | 10 |
|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 10 |
| 1. 일반적 개념 | 10 |
| 2. 법률상의 개념 | 11 |
| 제2절 보호처분,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의 성격논의 | 12 |
| 1. 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의 성격 | 12 |
| 2.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성격 | 14 |
| 제3장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 18 |
| 제1절 가정폭력 발생 실태 | 18 |
| 제2절 가정폭력 관련 법률 | 21 |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2 |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3 |
|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 24 |
| 1. 경찰 | 25 |
| 2. 검찰 | 28 |

3. 법원 30

제4장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실태와 실효성의 문제 32

제1절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실태 32

제2절 긴급임시조치 실효성의 문제 34

1.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부재 34

2. 검사 경유 절차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공백 36

제5장 외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과 경찰의 대응 38

제1절 미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과 제도 38

1. 개관 38

2. 여성폭력방지법 39

3. 민사적 보호명령 41

4.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정책 49

제2절 영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 58

1. 개관 58

2. 가족법상의 보호명령 58

3. 가정폭력 보호통지, 가정폭력 보호명령 60

제3절 독일의 가정폭력 대응법률 67

1. 개관 67

2.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적 보호를 위한 법률」 68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경찰법 70

| | |
|---|-----------|
| 제6장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 73 |
| 제1절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외국 법제 비교 | 73 |
| 제2절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 76 |
| 1.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벌칙 개정방안 | 76 |
| 2.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규정 신설방안 | 78 |
| 제3절 검사 경유 배제 | 80 |
| | |
| 제7장 결론 | 84 |
| 참 고 문 헌 | 86 |



표 목 차

| | |
|---------------------------------------|----|
| <표 1> 가정폭력 범주와 유형들 | 11 |
| <표 2> 가정폭력 대상 범죄 | 12 |
| <표 3>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 19 |
| <표 4> 가정폭력 재범자 및 재범률 현황 | 20 |
| <표 5> 최근 5년간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현황 | 33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가정폭력 처리 절차 | 24 |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고 국가가 법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특히 여성·아동·노인 등 상대적으로 힘의 열위에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에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에야 비로소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절차를 마련한 법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24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1년의 법 개정을 통해서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동 법에 포함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도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퇴거 및 격리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상의 접근금지명령을 내용으로 한다.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시간적·공간적으로 일정 정도 안전을 보장받고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숙고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더불어 긴급임시조치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절차이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법제 내에서 긴급임시조치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행 7년차를 맞는 지금까지 긴급임시조치의 실제적 효과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긴급임시조치 운용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문제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가해자를 제지할 강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지만, 과태료 규정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강제력이 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만, 동 조치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가해자의 위반행위를 제지할 강제수단이 되지 못함으로써, 긴급임시조치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제2장에서 현행 법 체계에서 긴급임시조치의 성격을 논의하고, 제3장에는 현행 법체계에서 경찰, 검사,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들의 가정폭력 사안 처리절차를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긴급임시조치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5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 긴급임시조치와 기능 및 성격상 유사한 대응법제를 비교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대응법제 분석에 기초하여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문헌연구에 기초해 있다. 특별히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성격의

법제 분석을 위하여 관련 법규, 연구논문, 정부기관 보고서, 제도 운영 관련 프로토콜 및 매뉴얼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제2장 가정폭력의 개념과 긴급임시조치의 성격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영문 표현은 ‘Domestic Violence’가 사용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Home Violence’, ‘Family Violence’ 등이 있는데, ‘Home Violence’는 가정의 의미보다 집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강조되어 집밖에서 벌어지는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포함하지 못하고, ‘Family Violence’는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한정시킴으로써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Home의 공간적 개념과 Family의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대체로 행위 주체와 행위 유형을 포함하여 정의된다. 즉 가족구성원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통해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포함시키고 있다.¹⁾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정의된다.²⁾

1) 김은경,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32-133쪽.

2) M. Johnson,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995, pp. 283-294.

〈표 1〉 가정폭력 범주와 유형들

| 범주 | 구체적 유형 |
|--------|--|
| 신체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 속박, 감금,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행위 |
| 정서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스스로 정신 이상자로 믿게 만드는 행위 · 두려움, 불안,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 · 잠을 못자게 하고 괴롭히는 행위 |
| 경제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돈과 재산을 가져가거나 통제하는 행위 · 일을 못하게 하고 경제권을 통제 관리하는 행위 |
| 언어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소리로 소리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의 행위 |
| 성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후 강제적으로 강간 행위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강제적 성학대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 |

출처: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2001, 132쪽.

2. 법률상의 개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에는 현재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이거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 친자 관계 포함)이거

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의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등을 포함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강제추행,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해당된다(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가정폭력 대상 범죄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비친고죄 |
|----|-------------|--|--|
| 유형 | 사자명예 훼손, 모욕 |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주거·신체수색, 재물손괴,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

출처: 윤덕경·김상운 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2014, 11쪽.

제2절 보호처분,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의 성격논의

1. 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의 성격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개입은 형사소송절차와 가정보호절차의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것과 별도로 가정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가정폭력 법제의 대표적 특징이다.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정보호절차가 도입된 것은 가정폭력을 다

른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장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처벌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가정의 생계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정의 영역에는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³⁾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규정은 동 법의 제정목적이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자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인권보호에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가정보호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와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검사에게 해당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 단지 검사선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구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⁵⁾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이중적 성격을 띤다. 우선 보호처분은 국가의 형벌권에 바탕을 둔 형사제재로 이해될 수 있다.⁶⁾ 보호처

3) 김은경, 앞의 글, 2001, 98-99쪽.

4)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김은경, 가정폭력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연구 제65호,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14-15쪽; 정세종,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0호, 2015, 318쪽.

6) 가정보호처분이 복지적 행정적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는 견해는 박미숙, 가정폭력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01, 86쪽.

분은 가정폭력범죄라는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보호 처분들은 범익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범의 억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⁷⁾ 한편, 보호처분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 방안이다.⁸⁾ 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듯이, 형사처벌과 사회내 처우의 중간형태를 띠는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⁹⁾

보호처분의 이중적 성격은 그 보호처분의 내용에서도 발견된다. 보호처분의 내용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가 혼재되어 있다. 보호처분 제1호~제3호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제4~제8호는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제재조치이다.¹⁰⁾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제재조치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조치들이 보호처분 내에 혼재해 있는 결과, 보호처분의 성격은 모호해진다. 이러한 서로 다른 조치의 혼재는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호처분의 이중성과 모호성은 임시조치와 본 연구의 주제인 긴급임시조치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성격

임시조치는 용어가 나타내고 있는 그대로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한다.¹¹⁾ 보호처분과 마찬가지로 임시조치도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임시조치의 내용 중 제1-3호는 피

7) 최병각, 가정폭력사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4, 2011, 832쪽.

8) 최병각, 위의 글, 2011, 834쪽.

9) 김용우,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2, 27-28쪽;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228쪽 재인용.

10) 최병각은 보호처분이 가정폭력 사범의 환경조성과 성행교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처분은 피해자 보호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최병각, 위의 글, 2011, 833쪽)

11)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51쪽.

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인 반면에, 제4호는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 조치로서 가해자 성행 교정조치이고, 제5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로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한 신병확보 조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보호조치의 내용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 조사 심리를 위한 신병확보 조치 등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조치들이 혼재되어 있다.

처벌법상 임시조치는 내용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구조상으로는 가정보호사건의 최종 처분에 앞서 내려지는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¹²⁾ 그래서 임시조치는 실제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의 필요를 갖고 있으면서도, 임시조치가 시행되는 절차는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과 같이 마치 형사절차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와 같은 구조로 짜여 있다.¹³⁾

지난 2011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처리 절차에 긴급임시조치가 도입되었다. 동법 제8조2 규정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행사하는 조치이다. 동법 제8조의3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긴급임시조치의 주체와 긴급임시조치 이후 임시조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구속영장 신청절차처럼 검사를 경유

12) 이호중, 위의 글, 2008, 142쪽.

13)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0집, 2010, 210쪽.

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정폭력처벌법상으로 긴급임시조치는 형사처분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긴급임시조치 도입 취지,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긴급임시조치 목적에 비추보면, 긴급임시조치는 형사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먼저 2011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문은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개정문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이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다른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예방활동이다.¹⁴⁾

또한 응급조치(동법 제5조), 임시조치(동법 제8조)를 포함하여 긴급임시조치(동법 제8조의2) 등은 모두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나 그 재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¹⁵⁾

일반적으로 외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민사상 보호명령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외국 가정폭력 대응법제에서 민사상 보호명령이나 우리나라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모두 기본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

14)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b, 200쪽.

15) 최병각, 앞의 글, 2011, 833쪽.

으로 하는 민사상 보호명령과 다르지 않다.¹⁶⁾ 긴급임시조치의 실제적 성격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내리기 위한 형사처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논의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긴급임시조치의 형식적 성격과 실제적 성격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6)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해질 수 있고, 각각 그 요건, 절차, 방식, 내용 및 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최병각, 앞의 글, 2011, 840쪽).

제3장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제1절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 범죄 발생 현황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하고 있는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 등에서 집계하고 있는 공식 범죄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 신고가 되어 관련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이다.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범죄통계는 가정폭력 범죄 발생과 증감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그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비율, 즉 암수범죄율이 매우 높은 까닭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공식 범죄통계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실태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폭력 피해 실태조사로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있다.

〈표 3〉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조치 | |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 |
|------|--------|--------|-----|--------|----------------|
| | | | 구속 | 불구속 | |
| '10년 | 7,359 | 7,992 | 60 | 7,932 | 450 |
| '11년 | 6,848 | 7,272 | 51 | 7,221 | 341 |
| '12년 | 8,762 | 9,345 | 73 | 9,272 | 494 |
| '13년 | 16,785 | 18,000 | 262 | 17,738 | 1,579 |
| '14년 | 17,557 | 18,666 | 250 | 18,416 | 2,819 |
| '15년 | 40,822 | 47,549 | 606 | 46,943 | 15,710 |

출처: 2016 경찰백서, 127쪽.

먼저 공식적인 범죄통계로서 경찰의 가정폭력 검거건수와 인원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10년 검거건수는 7,359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5배 이상 늘어난 40,822건을 기록했다. 2015년 검거건수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년대비 2.3배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 2015년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도 크게 늘어나서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난 15,710명이었다.

특별히 최근 들어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그동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눌러 감춰져 온 가정폭력 범죄를 피해자들이 드러내고 더욱 적극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4대악 척결의지가 관

련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 가정폭력 재범자 및 재범률 현황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검거인원 | 7,992 | 7,272 | 9,345 | 18,000 | 18,666 | 47,549 |
| 재범자 | 1,619 | 2,395 | 3,009 | 2,129 | 2,072 | 2,348 |
| 재범률(%) | 20.3 | 32.9 | 32.2 | 11.8 | 11.1 | 4.9 |

출처: 2016 경찰백서, 128쪽 재구성.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가정폭력 재범률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재범률은 지난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범률이 크게 줄어든 것은 재범자 규모가 2~3천명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검거인원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이다. 즉,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나 검거인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상습적인 재범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범자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재범률 감소추이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지하고라도 재범률의 감소는 긴급임시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실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집계하는 공식 범죄통계 자료와 더불어 피해자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실태조사의 결과는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피해자 실태조사로서,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¹⁷⁾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최근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

피해율은 3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6년 실태조사의 경우, 여성이 지난 1년간 경험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피해율은 12.1%였고, 남성이 지난 1년간 경험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피해율은 8.6%로 나타났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여성의 폭력피해율은 29.8%, 남성의 폭력피해율은 27.3%로 조사된 바 있다.¹⁸⁾

종합적으로 볼 때, 공식범죄통계상으로는 지난 6년 동안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4대약 체결의지에 힘입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폭력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고, 실제 가정폭력 발생추이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가정폭력 관련 법률

우리나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다. 이 두 법은 모두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함께 시행되었다. 이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적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적 성격의 법인 반면,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행정·복지적 성격을 띤다.¹⁹⁾

17)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마다 수행하는 법정조사이다.

18)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2016, 160쪽.

19)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21(2), 2013, 44쪽.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목적)을 통해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에서 드러나듯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법의 이러한 성격은 동법의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이 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2장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조문은 51개로서 전체 66개 조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형사사법권의 발동을 통한 수사와 그 결과에 의한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사건 진행,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보호(가해자 퇴거 및 접근금지), 셋째 보호처분을 통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적용과 재범방지 등이다.

동법은 1997년 제정된 이래 2017년 현재까지 총 24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2002년 12월(6차 개정)에는 입법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추가하였고, 2005년 1월(7차 개정)에는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명령 규정을 마련했으며, 2007년 8월(11차 개정)에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조치 청구요건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 청구요청권을 신설했고, 2011년 7월(14차 개정)에는 긴급임시조치 등을 신설하여 경찰의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민사적 보호명령장치로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설했다. 2012년 1월(17차 개정)에는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여 해당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11월 현재 8개의 발의안이 법안심사 중인데, 발의안 중에는 체포우선주의 도입(남인순 의원안),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유재중 의원안), 피해자 보호중심의 목적 규정 수정과 (긴급)임시조치 신청권자 범위확대(표창원 의원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의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은 제1조(목적)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전체 구성상 장별 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시설 및 긴급전화센터(1366)의 설치 및 운영,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아동 취학지원, 피해자 치료보호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 등이다.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그림 1〉 가정폭력 처리 절차



출처: 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

1. 경찰

가.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취하는 초기대응 조치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거나 피신시키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다면, 응급조치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된다.²⁰⁾

응급조치를 이행한 경찰관은 사건 처리시 KICS상에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 응급조치 내용 등을 기재한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인계서 등을 작성한 후 주무부서에 인계한다.²¹⁾

나.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2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

20) 최병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94쪽.

21) 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 매뉴얼, 17쪽.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이하 퇴거명령),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하 접근금지명령),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하 통신금지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와는 상관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가해자에게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응급조치가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거나 피신시킴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시도하는 조치라면,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와의 분리를 시도하는 조치이다.²²⁾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실무상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²³⁾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 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22) 이러한 조치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체포로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를 통해서 가해자의 신병을 최대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최병각, 앞의 글, 2014, 95쪽).

23) 긴급임시조치 단계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재범위험성 조사표(7점 이상이면 고위험), 긴급임시조치확인서(서류 편철), 긴급임시조치통보서(가해자 교부)를 작성하고, 현장 조치 이후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수사팀에 인계한다. 담당형사는 지체 없이 임시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신청한다(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 매뉴얼, 18쪽).

경찰이 긴급임시조치 위반자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통보하는데, 법원에서는 2015년 7월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1년 7월(14차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조항이 포함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조항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즉,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7~10일이 소요되기 일쑤였고, 검찰에서도 1주일 이상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

실무적으로 가정폭력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① 재범위험성 조사표(7점 이상이면 고위험)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② 긴급임시조치 행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²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하는데, 가해자에게는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교부하고, 긴급임시조치확인서에 가해자 서명을 받아 서류로 첨부하며,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수사팀에 인계한다.²⁵⁾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를 경유(48시간 이내 청구)하여, 판사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집행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3 제2항).

24) 실무상 긴급임시조치 행사 기준은 재범위험성 조사표 기준으로 총점 7점 이상이거나 폭행 심각도가 상인 경우,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나 가정폭력의 빈도가 (본건 제외) 3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25) 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 18쪽.

다. 임시조치 신청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항)

경찰은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특례법 제65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한 임시조치 제1호~제3호 위반시 임시조치 제5호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 제5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가 취해진다.

2. 검찰

가.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이하 퇴거명령),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하 접근금지명령),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하 통신금지명령)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위의 ①~③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5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3 제1항).

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또한 검사는 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 2).

3. 법원

가.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이하 퇴거명령),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하 접근금지명령),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하 통신금지명령),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임시조치 기간은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회 연장(최장 6개월)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위탁(제4호)이나 유치장 유치(제5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1회 연장(최장 2개월)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①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

봉사·수감명령, 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각 처분은 병과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위 ④의 사회봉사·수감명령의 보호처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보호처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

다.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③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각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항)

제4장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실태와 실효성의 문제

제1절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실태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2항(긴급임시조치)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취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7월 동법 제14차 일부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 조항과 함께 신설된 것으로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별히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속적인 비판을 수용하여 도입된 것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초기 대응하는 경찰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피해자 보호조치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 것일까? 아래 <표5>은 지난 2011년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신청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최근 5년간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현황

(단위: 건, %)

| 구분 | 가정폭력 검거건수 | 긴급임시조치 | | 임시조치 신청 | |
|-------|--------------|--------|-------|---------|-------|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11년 | 6,848 | 14 | 0.2 | 255 | 3.7 |
| ' 12년 | 8,762 | 119 | 1.3 | 702 | 8.0 |
| ' 13년 | 16,785 | 1,002 | 5.9 | 3,789 | 22.5 |
| ' 14년 | 17,557 | 1,046 | 5.9 | 3,378 | 19.2 |
| '15년 | 40,822 | 2,312 | 5.6 | 6,488 | 15.8 |

출처: 2016 경찰백서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가 시행된(2011년 7월)해인 2011년의 상황은 차지하더라도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정폭력이 4대 사회악으로 지정되어 가정폭력 근절대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던 상황에서도 긴급임시조치 비율은 전체 가정폭력 검거건수의 6%에 불과하다. 임시조치 신청이 활용되는 정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3년의 경우, 전체 가정폭력 검거건수 중에서 임시조치 신청건수는 22.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서 긴급임시조치 비율은 5.9%에 불과했다. 경찰단계에서의 임시조치 신청과 긴급임시조치의 대표적 차이는 긴급성 여부일 뿐이다. 단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긴급임시조치 시행이 낮은 것일까?

장미혜(2017)는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308명과 지역경찰 354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건경험, 관련제도 시행경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였는데,²⁶⁾ 지역경찰 대상 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시 긴급임시조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68.8%는 시행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보인 한편, 긴급임시조치 효과성에 대해서는

26) 장미혜,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35쪽.

33.7%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긴급임시조치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 허용)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외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해자 제재 조치로 약하다’(75.9%)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윤덕경 외(2014)의 연구에서는²⁷⁾ 201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경기, 강원·충청, 경상, 전라·제주권역에 속한 경찰관 156명을 대상으로(유의표집 방식 선정)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 관한 경찰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72.1%가 ‘긴급임시조치 행사와 관련 실효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제2절 긴급임시조치 실효성의 문제

1.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부재

긴급임시조치 실효성에 관한 논의는 경찰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행사했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반한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록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가해자의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퇴거와 격리,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피해자보호명령 혹은 임시보호명령 등의 금지내용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목적이 동일하다. 가정폭력 가해

27) 윤덕경·김상운 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46쪽.

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내린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으로 내린 퇴거와 격리·접근금지·통신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성립시키고 있고, 검사의 청구에 기초해 임시조치로 내려진 퇴거와 격리·접근금지·통신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치소 유치²⁸⁾가 가능한 반면, 사법경찰관이 내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후 경제적 제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경제단위를 달리하지 않는 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조치이다.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조치는 어느 정도 심리적 강제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보장할 수 없다.²⁹⁾ 그것이 어떠한 강제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⁰⁾ 더구나 흥분한 상태에 있는 가해자가 과태료 부과를 어떠한 제재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³¹⁾ 과태료 부과는 가해자에게도 전혀 동의되지 못하는 제재이다. 이러한 까닭에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의 인식도 부정적이고, 현장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²⁾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경찰에서 관련기관(여성가족부나 시군구청)에 과태료를 통보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이 없다.³³⁾

28)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9) 최병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98쪽.

30) 김은경 외, 현행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199쪽.

31) 윤덕경·김상운 외, 앞의 글, 2014, 68쪽.

32) 윤덕경·김상운 외, 앞의 글, 2014, 68쪽.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과태료 처분이 강제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태료 처분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지는 행정질서벌의 한 형태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한다. 즉, 긴급임시조치 위배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성홍재는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합법적으로 84일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⁴⁾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는 마련가지이다. 그런데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신청(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5호)이 가능하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 두 조치는 모두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해진다. 전자는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긴급성이 부가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황이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과 비교한다면,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더욱 위중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긴급임시조치가 위반되는 상황에 대한 제재수단은 오히려 취약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2. 검사 경유 절차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공백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 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에서는

-
- 33) 김병화 박운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1호, 2015, 66쪽.
- 3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야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동법 제20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21조). 따라서 가해자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합법적으로 84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성홍재, 앞의 글, 2011b, 197쪽)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 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 청구절차와 마찬가지로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경유 절차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경찰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를 강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³⁵⁾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은 임시조치 활용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⁶⁾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효과는 조치의 신속성에 달려 있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청구 절차에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치의 목적과 성격에 비춰볼 때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5) 이호중, 앞의 글, 2008, 142쪽.

36) 김운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3, 132쪽.

제5장 외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과 경찰의 대응

제1절 미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과 제도

1. 개관

미국의 가정폭력 법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절차를 두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민사상 보호명령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즉, 미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범죄자에게는 수사, 기소,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을 부과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상 보호명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³⁷⁾

미국의 가정폭력 대응 법제를 다루는 이 절에서는 비록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미국의 가정폭력 입법례는 찾기 어렵지만, 긴급임시조치와 그 기능적 유사성(퇴거 및 접근금지명령)이 있는 민사적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연방 및 각 지역차원의 운용 사례를 살피는 한편, 최근 국내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가정폭력 체포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37) 정세종, 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2호, 2016, 109쪽.

2. 여성폭력방지법

가. 개관

1960년대 때맞는 여성운동(battered women's movement)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보호운동은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의 제정을 가져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족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연방정부의 개입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피해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공공 재난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범죄’로 다루고 있다.³⁸⁾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여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담고 있다. 여성폭력 전과자가 저지른 여성폭력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배상 외에도 재판 및 치료비용 등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의무적인 체포를 강조하고 있다.

38)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13, 38쪽.

나.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형사사법적 대응의 변화

여성폭력방지법의 제정은 미국의 가정폭력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법의 제정을 계기로 동법 제정 이전에 실시된 미네아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의 결과, 즉 가해자 남성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구속이 가정폭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관련 연구들을 통해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장 없는 의무적 체포를 일반화시킨다. 1990년 5%에 불과하던 가해자 체포율은 1996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³⁹⁾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이 가져온 형사 사법적 대응의 중요한 다른 변화는 검찰에 강제기소(No-Drop)정책이 채택된 것이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동법의 제정은 피해자에게 주어졌던 고소 취하 권한을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정폭력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검찰의 강제기소정책이 여성폭력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검찰의 강제기소정책이 대부분 결혼관계나 동거관계를 끝내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피해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검찰의 강제기소정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⁴⁰⁾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이 법원에 가져온 변화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관할권의 확대이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전자감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

39) Leigh Goodmark, "The Legal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Problems and Possibilities," Saint Louis University Public Law Review, Vol. 23, 2004, p. 11; 이창무, 앞의 글, 2004, 287 재인용.

40) 이창무,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04, 289쪽.

자에 대한 보호명령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가장 보편적인 조치이다. 법원의 보호명령이 가정폭력 재범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보호명령이 재범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범이나 범죄경력이 많은 범죄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⁴¹⁾

3. 민사적 보호명령

가. 개관

미국의 가정폭력 대응 법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것은 법원에 의한 보호명령으로서, 민사·형사법원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과 학대, 위협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법원의 보호명령은 한 개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⁴²⁾

미국의 각 주에서는 보호명령(Protective Orders) 외에도 유사한 서로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억제명령(restraining orders), 금지명령(injunctions), 접근금지명령(stay away orders), 접촉금지명령(no contact order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일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조치이다.

미국에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s)을 가정폭력 관련법에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시

41) Adele Harrell, Barbara Smith, and Lisa Newmark, Court Processing and the Effects of Restraining Ord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1993, p.35; 이창무, 앞의 글, 2004, 290쪽 재인용.

42)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보호명령'(protection orders)이 "타인에 대한 폭력적이며 위협적인 행위나 괴롭힘, 타인과의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 접근을 막기 위하여 내려지는 어떠한 금지명령이나 기타 법원의 명령"이라고 규정된다.

작된 페미니즘 운동은 매맞는 여성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영향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적극적인 형사 사법적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976년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최초로 보호명령을 규정한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1989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와 워싱턴 DC에서 유사한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대다수의 주에서 형사법이 배우자 학대에 대응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민사보호명령은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³⁾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AWA)에서는 가정폭력이 두 개의 주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 다른 주에서 이뤄진 보호명령을 해당 주의 보호명령과 같이 집행하게 하고 주의 경계를 넘어 일어나는 보호명령 위반행위를 연방범죄로 다루었다.⁴⁴⁾

가정폭력 관련 민사법의 입법 목적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파트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정모욕죄(criminal contempt)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나. 「가정폭력 모범법전」상의 보호명령제도

1994년 미국 가정법원관사협회는 가정폭력 모범법전⁴⁵⁾을 마련했다.

43) 홍춘익, 가정폭력관련법제의 개혁: 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1, 345쪽.

44) 홍춘익, 위의 글, 2011, 347쪽.

모범법전은 각 주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모델로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가정폭력 모범법전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은 형사처벌과 형사절차를, 제3장은 민사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2장에서는 형사처벌과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이 개입된 범죄’는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방화,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손괴, 살인, 유괴, 성범죄, 장물 위반, 총기법 위반, 소란행위, 가정범죄(family offence), 스토킹, 무단침입, 기타 주 정부가 추가로 규정한 범죄 등이다.(제201조)

동법 202조에서는 형사절차상의 (긴급)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 보호명령에는 청구인 또는 다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청구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전화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청구인의 주소로부터 퇴거 명령, 청구인이나 가족이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주거, 학교, 직장 또는 특정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법원이 특정한 총기 또는 무기사용 금지명령 등이 포함되며, (긴급) 보호명령 위반은 경죄에 해당한다(제202조).

동법 제3장에서는 민사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하여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301조).

동법 제305조에서는 민사 절차로서 긴급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가정폭력의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는 점을 경찰관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전화로 진술하고 법원이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서면

45)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Family Violence: A Model State Code, 1994.

이나 구술로 일방적인(ex parte) 긴급보호명령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긴급보호명령으로 다음의 구제방안을 부과할 수 있다. (a) 대상자가 청구인 또는 다른 지정된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실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한다. (b) 대상자가 청구인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전화하거나 접촉하거나 직간접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c) 주거에 대한 소유권자를 불문하고 대상자를 청구인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킨다. (d) 대상자를 청구인의 주거, 학교, 직장 또는 청구인과 다른 지정된 가족이 출입하는 특정장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e) 그밖에도 청구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시적 양육권을 부여한다.

동법 제306조에서는 민사상의 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신청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전화, 접촉,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⁴⁶⁾ 신청인의 주거, 학교, 노동장소, 또는 신청인과 그 가족구성원이 자주 출입하는 특정장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⁴⁷⁾ 가해자가 신청인 또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주거에 대한 임차금 등의 지급, 담보에 대한 변제 및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의료비용, 상담비용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⁴⁸⁾

다. 워싱턴 D.C.의 보호명령제도

미국의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D.C.의 가정폭력 관련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민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민사 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가정폭력 관련법으로서 1982년에 제정된 「가족내 범죄행위법」(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umbia)이 있는데, 이 법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

46) Sec. 306. 2. (b)

47) Sec. 306. 2. (d)

48) Sec. 306. 2. (d) (1) (2)

지하는 민사보호명령(Civil Protection Order:CPO) 제도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1) 보호명령의 신청권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한 보호명령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 보호자, 감호인, 대리인 등이 가능하다.⁵⁰⁾

누구든지 대인간 폭력(interpersonal violence),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가족간 폭력(intrafamily violence), 스토킹, 성폭행 그리고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 주거침입, 불법 감금, 유괴, 절도, 재산침해, 고의적 해악, 스토킹, 성적 폭행, 성희롱, 정신적 학대 등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침해행위를 포함한다.⁵¹⁾

2) 보호명령의 유형

워싱턴 D.C. 「가족내 범죄행위법」은 가해자가 신청인에게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즉, (1) 신청인과 다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범행이나 협박 금지, (2) 신청인과 다른 보호대상자 혹은 장소에 대한 접근이나 접촉 금지, (3) 정신질환 등 의료치료 혹은 상담프로그램 참여, (4) 신청인의 주거시설에 출입금지 혹은 퇴거, (5)

49) 홍춘익, 앞의 글, 2011, 347쪽, 각주36.

50)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umbia § 16-1003 (a); Model Code o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Sec. 301

51)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umbia § 16-1001(12)

52)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umbia § 16-1005.

신청인 개인 소유이거나 공동소유인 특정 개인 재산의 소유나 사용 금지, (6)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권 일시적 부여, (7) 신청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제한을 둔 방문권 부여, (8) 대상자에게 비용과 변호사 비용 부담, (9) 경찰청에 보호명령 실행조치 명령, (10) 대상자의 무기소유권 박탈 등이다.⁵³⁾

3) 일시적 보호명령(긴급보호명령)

워싱턴 D.C. 「가족내 범죄행위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로 인하여 신청인 내지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복지가 급박하게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일시적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⁴⁾ 일시적 보호명령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접근금지명령 내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일시적 금지명령을 내린 후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

4)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임시 혹은 최종 명령을 위반하거나, 유효한 다른 지역 보호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청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법정모욕죄로 처벌된다.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벌금 1,000불⁵⁵⁾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⁵⁶⁾

53)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ombia § 16-1005. Hearing; evidence; protection order.

54)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ombia § 16-1004

55)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ombia § 22-3571.01. Fines for criminal offenses.

56)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ombia § 16-1005. Hearing; evidence; protection order.

라.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방지법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과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⁷⁾ 긴급보호명령은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한다.

1) 긴급보호명령

경찰관은 가해자의 최근 학대사건 혐의 혹은 학대 위협에 기초하여 가해자가 당장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납치, 노인학대 혹은 장애인 학대 등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긴급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California Family Code 6250조)

법관은 당장 현존하는 가정폭력 위험, 아동학대나 납치위험, 노인학대 혹은 장애인 학대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러한 학대나 가정폭력이 일어나거나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 제6251조).

2) 보호명령

보호명령은 특정한 학대행위(괴롭힘, 공격, 때림, 스토킹, 위협, 성적 폭행, 구타, 희롱 등)를 금지하는 보호명령(제6320조), 주거로부터 퇴거시키는 보호명령(제6321조), 다른 특정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보호명령(제6322조)로 나뉜다.

57) 긴급보호명령은 6215조, 보호명령은 6218조에 규정하고 있다.

3)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⁵⁸⁾에 따르면 보호명령을 일부러 또는 알면서도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273.6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다.⁵⁹⁾

캘리포니아주 형법 273.6조(a)에서는 가족법, 민사소송법, 복지법에 따라 발령된 보호명령을 일부러 알면서 위반하는 행위는 경죄(Misdemeanor)에 해당하고, 1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둘의 병과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⁶⁰⁾ 형법 273.6조(b)에서는 신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2,000불 이하의 벌금, 30일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둘의 병과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273.6조(d)에서는 전에 보호명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7년 이내에 다시 폭력행위 또는 폭력에 대한 확실한 위협(credible threat)이 개입된 보호명령 위반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보호명령 위반자 체포 규정

캘리포니아 주 형사소송법 제 83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체포대상자가 경찰관의 면전에서 공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 경우, 경찰관의 면전이 아니라도 중죄를 저지른 경우,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836조(a)).⁶¹⁾

경찰관이 민사소송법(Section 527.6), 가족법, 형법 또는 복지법에 따

58) 1993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가족법 제10편(Family Code Division 10)에 해당한다.

59) <http://codes.findlaw.com/ca/family-code/fam-sect-6388.html>

60) <http://codes.findlaw.com/ca/penal-code/pen-sect-273-6.html>

61) 최병각, 앞의 글, 2011, 811쪽.

라 발령되거나 다른 주의 법원에서 발령한 보호명령이나 제한명령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때, 대상자가 해당 명령을 고지 받고서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설령 경찰관의 면전에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해야 한다. 체포 후에는 지체 없이 보호명령의 등록을 확인해야 하고, 쌍방에 보호명령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된 공격자(dominant aggressor)를 체포한다(제836조©).

피의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폭행(assault), 또는 상해(battery)를 저지른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836조(d)).⁶²⁾

한편, 뉴욕주의 경우, 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및 ‘협박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중죄(felony)가 된다.⁶³⁾ 예를 들어, New York Penal Law 215.51조 및 215.52조에 따르면, 보호명령 위반행위는 법정모욕죄(criminal contempt)로서 E등급의 중죄이다.

4.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정책

가. 배경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곤란한 가정사로 취급되었다. 미국 경찰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의 체포를 경찰에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경찰이 보호명령 집행에 태만한 결과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이 법원을 통해 내려지면서부터이다. 1978년 뉴욕시 경찰은 제소자와의 화해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와 관련한 새로운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62) <http://codes.findlaw.com/ca/penal-code/pen-sect-836.html>

63) 백승흠, 앞의 글, 2008, 12쪽.

상대방에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설령 피해자가 체포를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체포하고, 해당 범죄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체포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여부를 경찰의 재량에 맡긴다는 원칙이다.⁶⁴⁾ 1980년대에는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1984)과 「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1984)이 채택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를 의무화하는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적극적 체포(pro-arrest), 체포우선주의(preferred arrest) 법률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제정되었다.

여기에다가 1980년에는 전국경찰서장회의(National Organization of Police Chief)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그 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실시된 미네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가정폭력 체포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1994년에는 경찰의 의무적 체포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 입법모델이 제시되고, 같은 해 연방법인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확립된다.

나. 각 주별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정책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와 관련된 법 규정은 경찰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여된 권한의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재량적(Discretionary) 형태, 우선적(Preferred) 형태, 의무적(Mandatory) 형태가 그것이다.⁶⁵⁾

64) 박소현, 앞의 글, 2013, 44-45쪽.

65) April M. Zeoli, Alexis Norris, Hannah Brenner, Mandatory, Preferred, or Discretionary: How the Class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Warrantless Arrest Laws Impacts Their Estimated Effects on Intimate Partner Homicide, Evaluation Review,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의 형태를 법률로 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의무적 체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규정하는 형태이다. 다음은 각 주별로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알라바마 주에서는 범죄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체포가 이뤄질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의 중죄 여부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⁶⁶⁾ 경찰관이 둘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거나 쌍방이 모두 부상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누가 주도적인 공격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불만을 평가해야 한다. 경찰관은 한 사람이 주도적인 신체 공격자라는 것을 판단하였다면, 가정폭력에 연루된 다른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없다.⁶⁷⁾

알래스카 주에서 경찰관은 지난 12시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경찰관은 같은 사건으로 한 사람 이상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우, 경찰관은 누가 주도적인 물리적 가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행동을 평가해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인 물리적 가해자인 것을 판단한 경우, 다른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없다.⁶⁸⁾

아리조나 주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의 경중이나 경찰관의 직접 목격 여부에 상관없이 영장 없이도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⁶⁹⁾

아칸사스 주에서 경찰관은 가정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믿을

35(2), 2011, p.1.

66) Ala. Code 1975 § 15-10-3 (8)

67) ALA. CODE §13A-6-134(a) (2000).

68) ALASKA STAT. §18.65.530(b) (West 2012).

69) ARIZ. REV. STAT. ANN. §13-3601(b) (2013).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이 지난 4시간 내에 그러한 행위들을 범했거나, 지난 12시간 이내에 신체적 부상을 포함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범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직접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⁷⁰⁾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 보호명령이나 제한명령 위반 의심신고에 대응하는 때, 그 사람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경찰관이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금할 수 있다.⁷¹⁾

콜로라도주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포함하는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체포해야 한다.⁷²⁾

워싱턴 D.C.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물리적 고통이나 질병을 포함하여 신체적 부상을 초래한 가정 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그 범죄를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⁷³⁾

플로리다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행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⁷⁴⁾

조지아주에서 경찰관은 (Code Section 19-13-1에 규정된)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할 때, 피해자의 특별한 동의나 피해자만의 요청, 혹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고려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⁷⁵⁾

하와이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가족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학대하

70) ARK. CODE ANN. §16-81-113(a)(1)(A) (West 2007).

71) CAL. PENAL CODE §836(c)(1) (West 2007).

72) COLO. REV. STAT. ANN. §18-6-803.6(1) (West 2001).

73) D.C. CODE §16-1031(a) (2009).

74) FLA. STAT. ANN. §901.15(7) (2009).

75) GA. CODE ANN. §17-4-20.1(a) (West 1995).

고 있거나 학대를 가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76)

일리노이스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77) 경찰관은 가족이나 구성원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있을 근거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차후 학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78)

인디애나주에서 경찰관은 가정 내 구타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79)

아이오와주에서 경찰관은 수사결과 가정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신체적 부상을 동반하지 않는 가정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해자 체포는 경찰의 재량권에 속하나, 신체적 부상을 동반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가할 의도를 가진 경우, 혹은 위험한 무기를 드러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체포한다.80)

켄사스주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81)

켄터키 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고의로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적 해를 가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82)

루이지애나주에서 경찰관은 가족구성원이나 데이트 상대가 학대를 당

76) HAW. REV. STAT. §709-906(2) (2013).

77) 750 ILL. COMP. STAT. ANN. 60/301(a) (2013).

78) 725 III.COMP.STAT.5/112A-30

79) IND. CODE ANN. §39-33-1-1(5)(B) (West 2011).

80) IOWA. CODE ANN. §§236.12(2)(a), (b) (West 2012).

81) KAN. STAT. ANN. §22-2307(b)(1) (2011).

82) KY. REV. STAT. ANN. §431.005(2)(a) (West 2012).

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학대를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합리적 수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학대 가해자 체포한다. (2) 경찰관이 범죄를 목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경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가해자 체포.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 체포는 경찰관의 재량권에 속한다.⁸³⁾

메릴랜드주에서 경찰관은 잠정, 임시 혹은 최종적인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영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체포하고 구금해야 한다.⁸⁴⁾

메사추세츠주에서 경찰관은 구타나 폭행, 학대를 포함하는 경범죄나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경찰관이 직접 본 경우, 우선적인 체포로 대응해야 한다. 가해자가 퇴거명령, 제한명령, 접촉금지명령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의무적 체포대상이다.⁸⁵⁾

미시간주에서 경찰관은 (1) 가정폭력(domestic assault)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경우, (2)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거나,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나, 피해자와 연인관계이(었)거나, 피해자의 (전)배우자인 경우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체포할 수 있다.⁸⁶⁾

미네소타주에서 경찰관은 지난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가정학대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주거지를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⁸⁷⁾

83) LA. REV. STAT. ANN. §§2140(A)(1), (2) (2012).

84) MD. CODE ANN., FAM. LAW §4-509(b) (West 2012).

85) MASS. GEN. LAWS ch. 209A §6(7) (2010).

86) MICH. COMP. LAWS ANN. §§764.15a(a), (b) (West 2002).

87) MINN. STAT. ANN. §629.341, sub. 1 (West 2013)

미시시피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지난 24시간 이내에 고의로 가정폭력 경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일방적인(ex parte) 보호명령, 심리후의 보호명령, 법원이 승인한 보호명령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⁸⁸⁾

미주리주에서 경찰관은 어느 일방이 (455.010조에 규정된 대로)가족이나 구성원을 상대로 가정폭력에 이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 경찰관은 그 범죄가 체포하는 경찰관의 면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을 체포할 수 있다.⁸⁹⁾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부상의 흔적이 있거나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⁹⁰⁾

뉴욕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같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중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⁹¹⁾

오레곤주에서 경찰관은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신체적 부상을 수반한 폭행이 발생했거나 당장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⁹²⁾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단순한 폭행, 가중처벌이 가능한 폭행, 다른 사람을 부주의하게 위협에 빠트리거나, 가족이나 구성

88) 2014 Miss. Laws WL No. 125 (S.B. 2629); Mar. 21, 2014 amendment to MISS. CODE ANN. §99-3-7(3)(a) (West 2013)

89) MO. ANN. STAT. §455.085(1) (West 2013).

90) N.J. STAT. ANN. §2C:25-21(a) (West 2004).

91) N.Y. Crim. Proc. Law § 140.10 (1) and (4)(a) and (b)

92) Or. Rev. Stat. § 133.055 (2)(a),(b),(c)

원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⁹³⁾

워싱턴주에서 경찰관은 16세 이상의 어떤 사람이 지난 4시간 이내에 가족이나 구성원에게 폭행을 범하였고 경찰관이 보기에 (1)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 (2) 피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남기는 폭행 (3)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당장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야기하는 신체적 행동이 의도적으로 일어났다고 믿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⁹⁴⁾

미국의 각 주별 가정폭력 체포정책을 비교해 보면, 경찰관의 재량권이 강조되는 주는 알라바마, 델러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즈, 인디애나, 캔사스,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23개 지역을 들 수 있고, 의무적 체포를 도입하고 주로서는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워싱턴 D.C., 아이오와, 켄사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사추세츠, 미시시피,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키오,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우타, 워싱턴, 위스콘신 주 등 25개 지역, 체포우선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주로서, 아칸사스, 메사추세츠, 몬타나, 노스다코타, 테네시 주 등 5개 지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정책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이 필요 없는 가해자(혹은 주도적 가해자)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재량권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93) 18 Pa. Cons. Stat. Ann. § 2711(a)

94) Wash. Rev. Code Ann. §10.31.100 (1), (2)(a),(b),(c)

는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 경찰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적 체포(Discretionary Arrest), 의무는 아니지만 체포를 우선하도록 하는 우선적 체포(Preferred Arrest) 등이 그것이다. 주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체포정책을 취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의무적 체포, 재량적 체포, 우선적 체포를 혼용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면, 재량적 체포정책을 취하는 주는 23개 주, 의무적 체포정책을 취하는 주는 25개 주⁹⁵⁾, 우선적 체포정책을 취하는 주는 5개 주로 파악되고 있다.

다. 의무적 체포의 효과 논의

의무적 체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의무적 체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1984년 Sherman, Berk의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나 경고 조치 보다는 현장 체포가 추후 가정폭력 행사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⁹⁶⁾ Maxwell, Garner, Fagan 등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합한 메타분석 결과, 경찰의 폭력 남성 체포와 구속이 여성폭력 방지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⁹⁷⁾그밖에도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 체포의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기초통계자료의 미비와 조사방법론상의 문제로 그 효과성은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다.

95) 2002년까지 미국 내에서 의무적 체포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21개 주와 콜롬비아지구를 포함하여 22개로 보고되어 왔고, 최근 연구들에서도 미국 내 의무적 체포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숫자는 모두 22개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의무적 체포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를 포함했다.

96) Sherman, L.W. & R.A. Berk,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1984.

97) Maxwell, C., Garner, J., & Fagan, J., *The effects of arres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New evidence from the spouse assault replication program*,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1.

의무적 체포주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점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가정폭력에 있어서만 유독 차별적으로 체포를 강제한다는 점 외에도 억제력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불러와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⁹⁸⁾ 상호폭행의 경우 여성들도 체포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⁹⁹⁾

제2절 영국의 가정폭력 대응법률

1. 개관

영국의 가정폭력 법제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게 하는 한편, 가정폭력 관련 규정을 가족법(Family Law Act)에 포함시켜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 등 보호명령을 통해 민사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가정폭력 대응 법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형사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단계에서도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긴급임시조치와 성격 및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중심으로 제도 운용 절차와 보호통지 위반에 대한 강제력 확보수단을 논의한다.

2. 가족법상의 보호명령

98) Shermann, L., Policing Domestic violence, Free Press, 1992; Davis, R.C., B. E. Smith and L.B. Nickles, The Deterrent Effect of Prosecuting Domestic Violence Misdemeanor, Crime and Delinquency, Vol. 44 No 3, 1998, pp. 432-442.

99) Blackwell, B. S., & Vaughn, Police civil liability for inappropriate response to domestic assault victim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2), 2003, pp. 129-146.

영국에서는 가족법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1996년 개정된 가족법 제4편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안이 편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가족법(Family Law Act, 1996)¹⁰⁰⁾에 근거하여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보장, 가해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점유명령(Occupation Order),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 학대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등을 부과할 수 있다.

영국의 가족법상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으로서 대표적인 형태는 점유명령과 학대금지명령이다.

점유명령(Occupation Order)은 부부 중 어느 한편 혹은 아동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유하고 있던 집의 미래 점유를 개시한다. 이 명령은 공동소유 자산으로부터 학대 가해자를 배제시키거나 학대 가해자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분할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그 자산(집)에서 이미 떠나 있는 상태라면, 점유명령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막거나 특정 공간에만 돌아오도록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점유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해자는 민사법정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학대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학대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학대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민사적 법원명령이다. 학대로 번역된 molestation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폭력, 위협, 괴롭힘을 포함한다.¹⁰¹⁾ 한번 학대금지명령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위반행위라도 있으면 곧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고, 위반자는 학대금지명령 위반으로 체포된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가정폭력, 범죄와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¹⁰²⁾에 따라 학대금지명령

100) 1995년 법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안된 가정폭력 법안이 가족법 제4편에 편입되어 199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01) <http://www.family-solicitors.co.uk/Non-Molestation-Orders>

(Non-molestation Order) 위반을 형사상의 범죄(criminal offence)로 다루는 새로운 규정(가족법 42A)이 가족법(Family Law Act, 1996)에 추가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¹⁰³⁾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¹⁰⁴⁾ 가족법 42A(5)에 따라¹⁰⁵⁾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즉결 심판시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학대금지명령 위반은 민사 법정모욕죄에도 해당하는데, 중복해서 처벌되지는 않으며 둘 중 어느 하나의 처벌을 받는다.¹⁰⁶⁾ 또한 이 범죄는 「경찰과 범죄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24(1)조에 근거하여 영장이 필요 없는 체포 대상이다.

3. 가정폭력 보호통지, 가정폭력 보호명령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난 2014년 3월 가정폭력 전과공개 제도(disclosure scheme)¹⁰⁷⁾시행과 동시에, 「범죄와 안전법」(Crime and Security Act)에 따라 경찰과 치안판사가 가정폭력 보호통지(Domestic

102) 이 법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형사법적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검사, 판사, 법률자문, 경찰관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전담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103)

<https://www.solicitorsjournal.com/news/crime/general-principles/breach-non-molestation-order-becomes-criminal-offence-1-july>

104) 형사적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대상자가 학대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 발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동법 42A(2))

105) 가족법(Family Law Act 1996) 42A조는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c. 28), ss. 1, 60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추가 삽입되었다.

10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6/27/part/IV/crossheading/nonmolestation-orders>

107) 이 제도에 따라 개인은 새로운 또는 현재의 배우자(또는 파트너)가 과거 폭력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관은 소속된 개인이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여기는 경우,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해당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Violence Protection Notices: DVPNs)와 가정폭력 보호명령(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DVPOs)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43개 모든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가정폭력 보호명령의 성격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가해자를 기소하고 보석 조건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기에는 가정폭력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과 치안판사가 당면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갭’을 채우기 위한 민사적 명령이다.

보호통지와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가해자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때, 또는 가해자 체포는 이뤄졌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단기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보호통지(DVPN)의 발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경찰이 발부하는 통지이기 때문에 발부되는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총경급 이상의 인가 권한을 가진 경찰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보호통지가 시행된 후 48시간 이내에 치안판사 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이 이뤄져야 하고 치안판사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48시간의 제한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호통지는 효력을 지속한다. 만약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보호명령은 최소 14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지속

된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발부하는 긴급 보호(괴롭힘 금지, 퇴거)통지이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경찰이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부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가해자에게 보호통지가 발부된 후 48시간 내에 경찰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s)을 신청해야 한다.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향후 최장 28일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주거지에 돌아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심사숙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보호명령 절차는 가해자를 기소하고 보석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사법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가해자에게 다른 어떠한 실행 가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발부된다.

나. 보호통지 및 보호명령 절차

1) 보호통지

가) 보호통지 신청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총경(Superintendent)계급 이상의 인가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의해서 발부될 수 있다.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안전법」(Crime and Security Act)에는 단순히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고려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가해자가 다른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하려 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가해자 구금 권한이 끝난 후에 보호통지가 발부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보호명령은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증거와 정보는 총경급의 인가권한을 가진 경찰관과 관련 치안판사법원에 넘겨져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적이고 조종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통지가 필요하다.

나) 보호통지 인가

「범죄와 안전법」 24조 (1)~(2)항은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총경급 이상의 인가 권한을 가진 경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위협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이나 폭력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범죄와 안전법」 24조 6항~8항에는 가정폭력 보호통지 인가와 시행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금지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보호통지는 가해자가 보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molestation)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는 피해자 거주지역에 접근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구역 내에 살고 있다면, 보호통지에는 가해자가 보호통지가 발부된 보호대상자를 구역에서 쫓아내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자가 구역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보호통지에 특정된 구역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다) 보호통지 발부

「범죄와 안전법」 25조 1항~3항은 보호통지 시행과 내용에 필요한 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통지를 발부하는 경찰관은 보호명령 신청을 위한 심리 통지(Notice of the Hearing) 시행을 위해서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한다. 특별히 법원 공판 일자와 시간이 알려지지 않아서 공판통지를 당장 시행할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절차는 중요하다. 심리 통지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지서가 곧 소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보호통지를 시행하면서 경찰관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금지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해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보호통지를 발부 받은 결과로 머물 곳이 없다면, 지역 긴급보호시설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하고, 보호통지가 발부된 가해자에게는 보호통지 대상자를 위한 정보 전달도 제공해야 한다. 이 전달에는 가정학대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하는 자원기관 목록을 담고 있다.

경찰관은 가해통지를 발부하면서 가해자가 집을 떠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필수품을 가져가는 것을 참관해야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참관하는 것은 분쟁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필수품 목록에는 약간의 돈, 개인적 필기장, 옷가지, 의약품, 일하는 데 필요한 물건 등이다.

보호통지가 시행된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 신청이 이뤄진다. 이 시간을 경과하면 보호통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라) 보호통지 위반

「범죄와 안전법」 26조 (1)항~(4)항은 보호통지 위반과 관련한 권한을 담고 있다.

「범죄와 안전법」 25조 (1)(b)항은 가해자가 보호통지를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26조 (1) (a)항은 보호통지를 위반한 가해자를 (치안판사)법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유치장에 구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통지 위반으로 가해자를 체포할 명분으로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power of entry)은 없다.

「범죄와 안전법」 제26조 (1)항에 근거하여 보호통지 위반자를 체포할 때, 체포된 위반자는 체포 24시간 내에 (치안판사) 법원에 데려가야 한다.

보호통지 위반은 형사상의 범죄이거나 기록에 남길 만한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을 찍거나 사진 혹은 DNA를 채취할 권한은 없다. 보호통지 위반이 그 자체로 형사상의 범죄는 아닐지라도, (치안판사)법원이 보호명령 신청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이다.

「범죄와 안전법」 27조 (1)~(10)항은 보호명령 신청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보호명령 신청은 경찰관, 경찰에 고용된 사무변호사 등에 의해서 이뤄진다.

2)보호명령

가) 보호명령 절차

「범죄와 안전법」 28조(1)~(3)항은 치안판사 법원이 보호명령 발부를 고려할 때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치안판사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폭력 행사 위협을 가했을 개연성을 만족시키면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보호명령은 희생자의 동의 없이도 발부 될 수 있다.

「범죄와 안전법」 28조 (6)~(8)항은 보호명령에 적용될 수 있는 금지사항들을 밝히고 있다. 보호명령은 가해자가 보호대상자(희생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보호대상자와 같은 구역에 살고 있다면, 보호명령은 가해자가 보호대상자를 구역에서 쫓아내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자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며(예외적으로 가해자는 경찰관의 참석한 가운데, 자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을 꺼내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 가해자가

구역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보호명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역 인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보호명령에는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가해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보호명령 시행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보호명령 기간은 보호명령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14일부터 최대 28일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 보호명령 승인과 거부

법원이 보호명령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대로 가해자에게는 보호명령에 포함된 금지사항의 내용, 가해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금지사항을 어길 경우의 처벌 내용, 보호명령 기간 등이 통보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보호명령에 포함된 금지사항의 내용, 가해자가 금지조건들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 보호명령 기간 등이 통보된다.

치안판사 법원이 보호명령을 승인하지 않기도 결정하면, 보호통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명령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호통지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고 다른 관련기관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다) 보호명령 위반

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치안판사 법원법(the Magistrates' Court Act 1980) 63조에 근거하여 민사상 법원모욕죄(civil contempt of court)에 해당하며, 민사상의 명령 위반으로 다뤄진다. 민사적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명령을 위반하는 동안 하루 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대 5000파운드 혹은 2개월의 징역에 처해진다.

「범죄와 안전법」 28조 (9)항은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호명령 위반으로 「범죄와 안전법」 제29조 (1)항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유치장에 구금되어야 한다(체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택에 진입할 권한은 없으며(따라서 경찰관은 PACE 17조와 같은 다른 진입권한에 의존해야 한다) 보호명령 위반이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문을 찍거나 사진 혹은 DNA를 채취할 권한도 없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보호명령 위반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에게 알리고, 위험성 평가를 검토하고, 보호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통보한 유관기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호명령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라) 조사 종료/ 보호명령 종료

보호명령을 종료시키는 데 경찰에게 요구되는 일은 없다. 보호명령 종료일이 되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 그렇지만 경찰은 보호명령의 효력이 소멸되면 PNC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제3절 독일의 가정폭력 대응법률

1. 개관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의 민사적 대응법률로서 2002년 1월 제정된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적 보호를 위한 법률」(약칭: 폭력보호법, GewSchG)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거처양도 원칙을 세우고 있는 한편, 민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귀환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경찰법 상에 특별규정을 두어 경찰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그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주 경찰의 조치로서 퇴거 및 귀환금지명령의 처리절차와 위반에 따른 강제력 행사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적 보호를 위한 법률」

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적 보호를 위한 법률」(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GewSchG)(약칭: 폭력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폭력보호법은 배우자나 동거인 등 파트너의 폭행으로부터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른 여러 보호조치의 신청은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제1조)

가. 보호명령

폭력보호법 제1조 1항에서는 누군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 피해자 주거의 일정한 주변에 머무르는 것,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머무는 특정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 피해자와의 만남을 야기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⁸⁾

가해자가 보호명령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구금

108)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_1.html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제4조)¹⁰⁹⁾

나. 거처양도(Wohnungsüberlassung)

폭력보호법에 따르면, “신체,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의 시점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공동의 주거생활을 할 경우, 피해자는 공동으로 이용하던 주거를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2조 제1항),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주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주거양도기간은 제한”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혼자 또는 제3자와 함께 주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법원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그 기간에 다른 적절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나 제3자의 절대적 이해에 반하지 않는 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제2조 제2항). “피해자에 대한 주거양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 이용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무효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제2조 제4항).¹¹⁰⁾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 주거에서 가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점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 긴급보호명령

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의 폭력 위협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보호명령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심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호명령 청구절차와 차이가 있다.

긴급보호명령 신청을 위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행 가능성과 긴급

109)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4.html>

110)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2.html>

성을 주장해야 한다.

3.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경찰법

주 경찰법 제34조a항에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 34a Wohnungsverweisung und Rückkehrverbot zum Schutz vor häuslicher Gewalt)을 규정하고 있다.

가.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

주 경찰법 제34조의a 제1항 제1문에서는 “경찰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와 그 가까운 주거로부터 가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이러한 영역으로의 귀환(Rückkehr)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그 위험성의 판단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경제적·감정적으로 종속되어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성의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이뤄진다.¹¹¹⁾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나 피해자 보호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주 경찰법 제34조의a 제1항 제2문에서는 “퇴거와 귀환금지의 공간 영역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되 상세히 특정해야”

111)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1), 2007, 283쪽.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역이나 주거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조 제1항 제3문에서는 동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조치를 “방실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직업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외시킴으로써 가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¹¹²⁾

주 경찰법에 따른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은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경찰관의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구두로 발하게 되는데, 구두로 발해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7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처분대상자가 지체 없이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가해자가 퇴거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개인용품을 가져갈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해자가 귀환금지 기간 내에 필수품을 가져간다는 명분으로 주거지에 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대상자에게 제1항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기 위한 수신인이나 송달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동조 제3항), “피해자에게 민사법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상담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과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4항)

퇴거와 귀환금지는 경찰이 예외적으로 더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 10일간 유효하다(제5항 제1문)¹¹³⁾

112) 다만, 이 경우에도 퇴거나 귀환금지명령에서 제외되는 공간은 가해자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적인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3)

https://recht.nrw.de/lmi/owa/br_bes_detail?sg=0&menu=1&bes_id=5173&anw_nr=2&ufgehoben=N&det_id=393705

나. 퇴거명령, 귀환금지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

가해자가 경찰의 퇴거명령, 귀환금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 경찰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동 규정에서는 경찰이 제34조의a에 의거한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¹⁴⁾ 제36조 제1항 제1문에서는 제35조 제1항 제4호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한 경우에 경찰은 지체 없이 자유박탈의 허용성과 계속성에 대한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관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구금의 계속을 사전에 명하지 않는 한” 늦어도 구금된 익일 자정까지 석방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입문 열쇠를 압류하거나 시정장치를 교체할 수 있고(주 경찰법 제43조 제1호), 대상자의 부작위에 의한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주 경찰법 제52조). 그러나 주 경찰법 제53조에 의하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금 부과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¹¹⁵⁾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임시 체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

주 경찰법 제34조의 a 제7항에서는 경찰이 가해자의 귀환금지명령 준수 여부를 처분기간 중 최소한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4) (1) Die Polizei kann eine Person in Gewahrsam nehmen, wenn 4. das unerlässlich ist, um eine Wohnungsverweisung oder ein Rückkehrverbot nach § 34a durchzusetzen.

115) 이성용, 앞의 글, 2007, 294쪽.

제6장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외국 법제 비교

미국 법제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민사상 보호명령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수사, 기소,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부과되고, 피해자에게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상 보호명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만이 행사하며 경찰은 가해자가 그 보호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형태이다. 미국은 경찰이 민사상의 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그 전에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퇴거명령을 발하는 긴급임시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¹¹⁶⁾ 따라서 미국의 법적 대응체계에서 우리나라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의 비교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영국의 가정폭력 대응 법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족법에 포함된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 등 민사적 보호명령을 통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16) 성홍재, 앞의 글, 2011b, 195쪽.

영국의 대응 법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2014년부터 「범죄와 안전법」에 따라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경찰단계에서 민사적 가정폭력 보호통지(DVPNs)와 법원의 가정폭력보호명령(DVPO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발부하는 긴급 보호통지로서, 퇴거명령과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을 포함한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하는 경우는 가정폭력에 대응한 민·형사적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이거나 긴급한 피해자 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가정폭력 보호통지와 보호명령 절차는 가해자를 기소하고 보석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사법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가해자에게 다른 어떠한 실행 가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발부된다. 경찰이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발부한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치안관사법원에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한다. 가정폭력보호통지는 경찰단계에서 다른 실행 가능한 제재수단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퇴거 및 괴롭힘(접근) 금지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영국의 가정폭력보호통지의 경우 민사적 대응조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논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가정폭력보호통지 대상자(즉 가해자)가 보호통지의 내용, 즉 퇴거명령과 괴롭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범죄와 안전법」에 따라 경찰이 영장 없는 체포와 치안관사법원에 데려가기까지의 유치장 구금을 행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의 고위 인가권한 경찰관이 인가한 가정폭력보호통지는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치안관사법원의 보호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입법례가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의 민사적 대응법률로서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

터 민사적 보호를 위한 법률」(약칭: 폭력보호법, GewSchG)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거처양도 원칙을 세우고 있는 한편, 민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주 경찰은 주 경찰법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행정처분으로 가해자에게 퇴거 및 귀환(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긴급입시조치와 유사하게 가해자에게 퇴거명령과 귀환(접근)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찰이 발하는 퇴거명령과 귀환(접근) 금지명령도 우리나라 긴급입시조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의 비교대상 입법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독일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의 퇴거명령, 귀환금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고, 출입문 열쇠를 압류하거나 시정장치를 교체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부작위에 의한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해자를 구금한 경우에 경찰은 지체 없이 자유박탈의 허용성과 계속성에 대한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즉, 영국의 가정폭력보호통지(DVPns)에 따른 퇴거 및 괴롭힘 금지명령과 독일 주 경찰의 퇴거 및 귀환(접근)금지명령은 모두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 발하는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우리나라의 긴급입시조치와 그 성격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단, 독일 경찰이 발하는 퇴거 및 귀환(접근) 금지명령은 행정처분인 반면, 영국의 가정폭력보호통지는 경찰단계에서의 민사적 조치이고, 우리나라의 긴급입시조치는 형식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2절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피해자 보호는 가정폭력 관련 법제의 주요 목적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적 절차가 가해자 처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민사적 절차상의 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적 절차로서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은 물론이고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성격은 형식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법상 제재조치로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과 기능은 피해자보호명령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단계에서 취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이다.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긴급임시조치 실효성의 문제의 초점은 긴급임시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즉,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 경찰이 개입하여 가해자의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조치가 유명무실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 위반한 데 따른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가능한 대안은 과태료 부과를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것과 가해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는 각각의 대안이 갖는 장단점과 현행법체계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1.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벌칙 개정방안

첫 번째 방안은 현재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과태료 부과(300만원) 규정을 개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이다.¹¹⁷⁾

구체적으로 현재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의 규정을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동법 제65조의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임시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¹¹⁸⁾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위반시, 500 이하 과태료 (제65조) ·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6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¹¹⁹⁾ 가정폭력처벌법도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임시조치 위반시 처벌수준에 맞추어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정폭력처벌법 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과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서로 다르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경찰이 행사하

117) 윤덕경·김상운 외, 앞의 글, 2014, 99쪽.
 118) 이용욱,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토론문,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77쪽.
 119) 단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도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가정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는 긴급임시조치는 모두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되고 있고 각각의 조치의 성격에서도 서로 차이가 없지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⁰⁾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그 하나는 가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벌금형은 형사처벌로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과태료 부과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즉 과태료 부과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듯이,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²¹⁾

2.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규정 신설방안

두 번째 방안은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는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영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행사하는 가정폭력 보호통지는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긴급임시조치와 거의 성격이 유사한데, 경찰의 가정폭력 보호통지를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범죄와 안전법」 25

120) 성흥재, 앞의 글, 2011b, 180쪽.

121) 김은경 외, 앞의 글, 2014, 199쪽.

조 (1)(b)항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법 26조 (1) (a)항에 근거하여 보호통지를 위반한 가해자를 (치안판사)법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유치장에 구금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주 경찰법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이 행사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귀환(접근)금지명령도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¹²²⁾ 독일 주 경찰은 가해자가 경찰의 퇴거명령, 귀환(접근)금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 경찰법에 따라서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경찰의 퇴거 및 귀환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구금은 영국과는 달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은 가해자 구금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독일의 경찰은 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열쇠 시정장치를 교체할 수도 있다. 즉,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가해자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가해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한 목적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 위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¹²³⁾은 타당하다. 그러나 임시조치 제1~3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로서 임시조치 제5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긴급임시조치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긴급임시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시조치 5호(구치소 유치장 유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장에서 즉시 체재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경찰은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경찰

122) 성홍재, 앞의 글, 2011b, 195쪽.

123) 김은경 외, 앞의 글, 2014, 요약문.

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시키고자 한다면, 다시금 검사를 통해서 임시조치 5호를 신청하고, 판사의 결정을 받아서 유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대개 임시조치 위반사건이 야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빨라도 하루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¹²⁴⁾ 그러므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작업은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금의 형태로서 경찰에게 보호조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¹²⁵⁾ 성홍재는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로서 가해자를 구금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²⁶⁾ 절차법적 요건으로 경찰이 보호조치를 사전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영장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긴급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위반자를 구금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과잉금지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으나,¹²⁷⁾ 긴급임시조치가 도입된 목적, 즉 피해자 보호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²⁸⁾

제3절 검사 경유 배제

가정폭력처벌법(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임시조치 시 검사

124) 윤덕경·김상운 외, 앞의 글, 2014, 69쪽.

125) 성홍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 연구, 제9권 제2호, 2011a, 138쪽.

126) 성홍재, 앞의 글, 2011a, 123-129쪽.

127) 최병각, 앞의 글, 2014, 100쪽.

128) 서거석·김운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문제점,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2, 91쪽; 백승흠, 앞의 글, 2008, 28쪽.

경유절차, 즉, 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시조치 청구 과정에 검사경유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가정폭력처벌법이 형사법적 성격이 강하고, 가정폭력처벌법 내에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가 가정보호사건의 중국처분에 앞서 내려지는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자리매김¹²⁹⁾ 되어 사법처분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활동과 구별되는 행정경찰활동에 속한다.¹³⁰⁾¹³¹⁾ 일반적으로 경찰의 임무는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 가해자 체포, 증거 수집 등의 사법경찰활동과 위험 방지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경찰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경찰활동은 형사법이 규율하는 영역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행정경찰활동은 행정법 영역으로서 경찰에게 일정한 재량행사권이 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취하는 것은 수사의 한 단계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의 내용은 체포,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통신금지명령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¹³²⁾

임시조치 명령은 인신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영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임시조치명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명령으로서, 행위자에게 강제적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

129) 이호중, 앞의 글, 2008, 142쪽.

130)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로서, 퇴거와 격리, 접근금지, 통신금지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하명에 해당한다.(최병각, 앞의 글, 2014, 98쪽)

131)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연구, 제11권 2호, 2013, 52-53쪽.

132)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학연구, 제11권제3호, 2011c, 6쪽.

아니라, 행위자 스스로가 이 명령을 준수하게 하고, 만약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다시 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¹³³⁾

즉,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형식적인 법구조상으로는 사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사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내용은 인신구속 등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행정경찰작용인 긴급임시조치에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리상 옳바르지 못하다는 점에서 검사경유 절차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임시조치 청구 절차에서 검사경유 절차가 배제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절차가 가정폭력사건 처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데 있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관건은 사법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청구절차는 마치 일반 구속영장 청구절차와 같이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³⁴⁾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긴급임시조치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나라로서 영국과 독일에서 경찰단계에서의 퇴거명령과 접근금지명령 조치가 진행되는 절차는 비교 준거가 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경찰단계에서의 긴급임시조치 시행과 법원에서의 임시조치 결정과 유사하게 영국의 경찰단계에서 가정폭력 보호통지(DVPNs)와 치안판사법원에서의 가정폭력보호명령(DVPOs)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를 취한다. 보호통지와 보호명령은 가정폭력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133) 김운곤, 앞의 글, 2010, 211쪽.

134) 김운곤, 앞의 글, 2010, 210쪽.

때에 시행된다. 영국 경찰의 가정폭력보호통지 발부와 치안판사 법원의 보호명령이 이뤄지는 과정에 검사가 개입하는 절차는 없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통지를 발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직접 치안판사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범죄와 안전법」 25조 1항-3항). 이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하는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로서 독일의 경우,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퇴거명령과 귀환(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주 경찰법에 따른 경찰의 행정처분이다. 즉, 독일에서는 경찰의 퇴거명령과 귀환금지명령을 행정처분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경유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고, 민형사상의 절차와 달리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해외 주요국가들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퇴거 격리 등 우리나라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명령을 발한 후, 검사의 경유 없이 직접 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법원의 검사경유를 배제하고 있다.¹³⁵⁾

요약하면, 가정폭력처벌법 내에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가 사법처분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긴급임시조치의 목적과 내용은 경찰의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외국의 유사한 입법례와 제도 비교를 통해 볼 때, 임시조치 청구 절차에서 검사를 경유하는 절차는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35) 이용욱, 앞의 글, 2017, 77쪽.

제7장 결론

지난 2011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포함된 긴급임시조치 규정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피해자를 가해자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적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피해자는 일정시간 동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과 단체의 도움을 얻어 자기 의지에 따라 자신의 미래에 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입법례를 두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가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거나 현장에서의 가해행위를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즉,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가해자에게 전혀 강제력이 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도록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과 영국과 독일의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대로 위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유치장에 구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입법례는 영국과 독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최근 2014년부터 클레어법의 시행과 함께 「범죄와 안전법」에 근거하여 긴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정폭력보호통지를 발부하게 하고 검사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안법원판사에게 가정폭력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보호통지를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머무는

공간에서의 퇴거와 격리, 접근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장이 필요 없는 체포가 이뤄지고 치안판사법원에 가기까지 구금이 이뤄진다. 독일에서는 주 경찰법에 경찰의 행정처분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명령 및 귀환(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위반시에는 구금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경찰이 발하는 가해자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현장 체포와 구금의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이 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절차를 마련하되, 최대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두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이원적 구조에 더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적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안에는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 그리고 사실상의 행정처분까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보호처분,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혼재시킴으로써 그 성격의 모호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그 본래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 행정처분 절차를 구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긴급임시조치가 경찰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민사적 형태의 경찰-법원 협조체계를 이루거나, 독일처럼 경찰의 행정처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매뉴얼.

경찰청, 경찰백서 2016

김병화 박운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1호, 2015.

김용우,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2.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0집, 2010.

김운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3.

김은경, 가정폭력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연구 제65호.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김은경,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은경, 김혜정, 박소현, 유숙영, 현행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21(2), 2013.

김재민, 가정폭력예의 효과적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연구, 경찰학연구, 제6권 3호, 2006.

박미숙,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01.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13.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4호, 2008.

- 서거석 김운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문제점,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2002.
- 성홍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경찰법 연구, 제9권 제2호, 2011a.
-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b.
-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1c.
-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2016.
- 윤덕경·김상운 외,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연구, 제11권 2호, 2013.
-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1), 2007.
- 이용욱,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토론문,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4.
- 이창무,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04.
-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장미혜,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정세종,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0호, 2015.
- 정세종, 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2호, 2016.
- 주명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강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제71호, 한국여성개발원, 2006.

최병각, 가정폭력사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4, 2011.

최병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홍춘의, 가정폭력관련법제의 개혁: 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1.

〈외국 문헌〉

Adele Harrell, Barbara Smith, and Lisa Newmark, Court Processing and the Effects of Restraining Ord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1993.

April M. Zeoli, Alexis Norris, Hannah Brenner, Mandatory, Preferred, or Discretionary: How the Class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Warrantless Arrest Laws Impacts Their Estimated Effects on Intimate Partner Homicide, Evaluation Review, 35(2), 2011.

Blackwell, B. S., & Vaughn, Police civil liability for inappropriate response to domestic assault victim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2). 2003.

Davis, R.C., B. E. Smith and L.B. Nickles, The Deterrent Effect of Prosecuting Domestic Violence Misdemeanor, Crime and Delinquency, Vol. 44 No 3, 1998.

Leigh Goodmark, "The Legal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Problems and Possibilities," Saint Louis University Public Law Review, Vol. 23, 2004,

Maxwell, C., Garner, J., & Fagan, J., The effects of arres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New evidence from the spouse assault replication program,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1.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Family Violence: A Model State Code, 1994.

Sherman, L.W. & R.A. Berk,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1984.

Shermann, L., Policing Domestic violence, Free Press, 1992.

〈법령〉

〈미국〉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A Model State Code, 1994.

Intrafamily Offenses Act of District of Colombia 1982

California Family Code

California Penal Code

New York Penal Law

Ala. Code 1975

ALASKA STAT. §18.65.530(b) (West 2012).

ARIZ. REV. STAT. ANN. §13-3601(b) (2013).

ARK. CODE ANN. §16-81-113(a)(1)(A) (West 2007).

CAL. PENAL CODE §836(c)(1) (West 2007).

COLO. REV. STAT. ANN. §18-6-803.6(1) (West 2001).

D.C. CODE §16-1031(a) (2009).

FLA. STAT. ANN. §901.15(7) (2009).

GA. CODE ANN. §17-4-20.1(a) (West 1995).

HAW. REV. STAT. §709-906(2) (2013).

750 ILL. COMP. STAT. ANN. 60/301(a) (2013).

725 Ill.COMP.STAT.5/112A-30

IND. CODE ANN. §39-33-1-1(5)(B) (West 2011).

IOWA. CODE ANN. §§236.12(2)(a), (b) (West 2012).

KAN. STAT. ANN. §22-2307(b)(1) (2011).
KY. REV. STAT. ANN. §431.005(2)(a) (West 2012).
LA. REV. STAT. ANN. §§2140(A)(1), (2) (2012).
MD. CODE ANN., FAM. LAW §4-509(b) (West 2012).
MASS. GEN. LAWS ch. 209A §6(7) (2010).
MICH. COMP. LAWS ANN. §§764.15a(a), (b) (West 2002).
MINN. STAT. ANN. §629.341, sub. 1 (West 2013)
2014 Miss. Laws WL No. 125 (S.B. 2629)
MO. ANN. STAT. §455.085(1) (West 2013).
N.J. STAT. ANN. §2C:25-21(a) (West 2004).
N.Y. Crim. Proc. Law § 140.10 (1) and (4)(a) and (b)
Or. Rev. Stat. § 133.055 (2)(a),(b),(c)
18 Pa. Cons. Stat. Ann. § 2711(a)
Wash. Rev. Code Ann. §10.31.100 (1), (2)(a),(b),(c)

〈영국〉

Family Law Act, 1996
Crime and Security Act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독일〉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GewSchG)
Polizeigesetz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PolG NRW)

〈웹페이지〉

<http://codes.findlaw.com/ca/family-code/fam-sect-6388.html>

<http://codes.findlaw.com/ca/penal-code/pen-sect-273-6.html>)

<http://codes.findlaw.com/ca/penal-code/pen-sect-836.html>

<http://www.family-solicitors.co.uk/Non-Molestation-Orders>

<https://www.solicitorsjournal.com/news/crime/general-principles/breach-non-molestation-order-becomes-criminal-offence-1-july>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6/27/part/IV/crossheading/nonmolestation-orders>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__1.html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__4.html

http://www.gesetze-im-internet.de/gewschg/__2.html

https://recht.nrw.de/lmi/owa/br_bes_detail?sg=0&menu=1&bes_id=5173&anw_nr=2&aufgehoben=N&det_id=393705

발 간 등 록 번 호
11-1332522-000068-01

2017-04
책임연구보고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실효성 제고 방안

2018년 9월 발행

발 행 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 행 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